

2015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추진계획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15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28.

여성가족부장관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국가·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 유연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배우자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신규 인증 2015. 4. 28.(화) ~ 7. 31.(금)
유효기간 연장 인증 및 재인증 2015. 4. 28.(화) ~ 6. 30.(화)
- 접 수 처 : 한국농림협회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m.mogef.go.kr)
- 결과발표 : 2015. 12월(예정)

3.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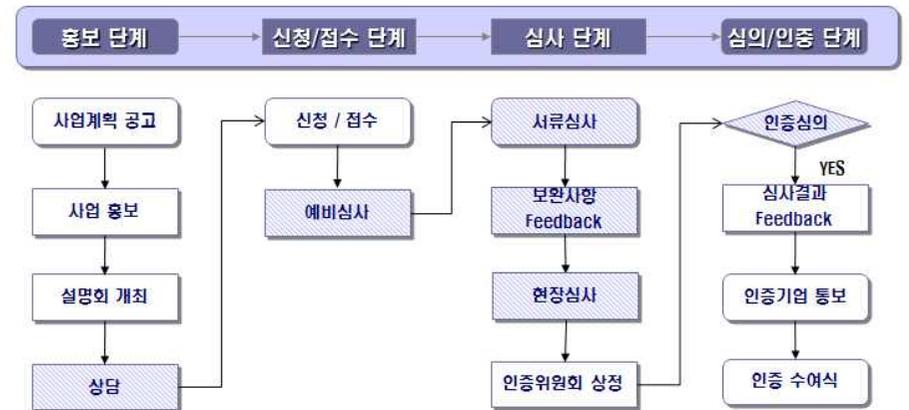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3)
- 사업자등록증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4)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신규/재인증 : 중소기업(별첨5), 대기업, 공공기관(별첨6)
 - 유효기간 연장 인증 : 중소기업(별첨7), 대기업, 공공기관(별첨8)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별첨9)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 공지사항

4. 인증 절차 및 추진일정

- 인증 절차



- >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한국농림협회인증원)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추진
- > 인증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
- >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 > 기업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기업에 제공

< 2015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일정	내용
인 증 설명회	■ 전국 권역별로 총 19회 실시 (4~6월)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인증기준 설명 등
인증 신청	■ 신규 신청 -신청기간: 4.28.(화)~7.31.(금) ■ 유효기간 연장 인증 및 재인증 -신청기간: 4.28.(화)~6.30.(화)	■ 접수처 : 한국농림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인증심사	서류심사 6~7월	※ 접수 후 수시
	현장심사 6~9월	※ 신청기업과 심사일정 협의 결정
인 증 수여식	12월(예정)	■ 인증서 수여, 우수기업 정포상, 우수사례 발표 등
심사결과 보고서제공	12월(예정)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강·약점, 발전방향 제언 등 보고서 제공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인증 심사비용 및 심사 소요일수

○ 심사비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비고
신규 인증 신청	무료	1,000,000원	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 인증 신청		500,000원	
재인증 신청		1,000,000원	

○ 심사비 납부

-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 심사 소요일수

(1)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신청

구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심사일수	1	2	1	4

※ 현장심사는 심사팀 2인이 1일 수행

(2) '유효기간 연장 인증' 신청

구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심사일수	1	1/2	1/2	2

※ 현장심사는 심사원 1인이 0.5일 수행

6.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

기업	공공기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인증을 받은 가족친화기업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32개 기관의 106개 인센티브 제공 중, '15.4월 기준)

7. 인증 설명회 안내

○ 주요 내용 : 가족친화인증 개요 설명,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일 정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지역	서울	경남 (창원)	강원 (춘천)	충북 (옥천)	전남 (무안)	경북 (구미)	대전	광주	경기 (수원)
일정	4.28(화)	4.29(수)	4.30(목)	5.7(목)	5.8(금)	5.11(월)	5.12(화)	5.13(수)	5.14(목)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충남 (홍성)	충북 (충주)	울산	전북 (전주)	부산	대구	인천	충북 (청주)	제주도	서울
5.19(화)	5.20(수)	5.21(목)	5.28(목)	5.29(금)	6.2(화)	6.3(수)	6.10(수)	6.15(월)	6.16(화)

· 참가대상 : 관심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세부일정 및 약도는 '2015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안내' 참조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설명회 문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이윤미 선임연구원)

Tel. 02-6309-9042~3, 9046~8, E-mail. wlb@kmar.co.kr Fax. 02-6309-9004

○ 설명회 신청 : 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8. 문의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9046~8)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30)

별첨 1. 가족친화기업 인증 개요

2. 2015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안내

3. 가족친화인증 신청서(공통)

4. 2015년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공통)

5. 2015년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신규/재인증 중소기업)

6. 2015년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신규/재인증 대기업, 공공기관)

7. 2015년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유효기간 연장 인증 중소기업)

8. 2015년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유효기간 연장 인증 대기업, 공공기관)

9. 2015년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공통)